

2026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친환경농어업법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완성

도서명 : 친환경농어업법

ISBN : 979-11-7393-125-3

발간일 : 2025-12-01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6,000원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지원(p13)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리(p27)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p61)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p65)

제6장 보칙(p87)

제7장 벌칙 등(p97~106)

[약어]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농림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림부장관

장관들은 장관, 해수부장관

부령들은 농림부령, 해수부령

유기자재는 유기농어업자재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은 휴업, 폐업

심사원은 인증심사원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농어업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 실천 농어업인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추구

-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해 생산자, 소비자 함께 보호

2. 정의

- 가. 친환경농어업은 생물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 농수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나. 친환경농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얻는,

- 1) 유기농수산물
- 2) 무농약농산물
- 3) 무항생제수산물등(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다. 유기는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해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등(유기식품과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 가공,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

**라. 유기식품은 유기적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과 수산식품)**

마.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이 직접 섭취
않는 방법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 취급되는 가공품
- 단, 기구, 용기/포장, 의약외품, 화장품 제외

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사. 유기자재는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나 재료로 해 만든 제품

아. 허용물질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등이나 유기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부령들로 정하는 물질

자. 취급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과 재포장

포함), 운송, 수입, 판매

카. 사업자는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3. 국가등의 책무

가)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등(이하 친환경농어업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 지자체와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등 진흥 종합 시책

추진

나)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농어업등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

4. 사업자의 책무

가)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 않거나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생산, 제조, 가공,
취급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 노력

나)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자재(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 생산/공급 노력

5. 민간단체의 역할

-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등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는,
- 국가등의 친환경농어업등 육성시책에 협조,
- 회원들과 사업자 등 교육, 훈련, 기술개발, 경영지도 해,
- 친환경농어업등 발전 노력

6. 농업의 근간인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함

- 국가등은 행사 등 사업 실시 노력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등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

8. 신고수리 기간

- 인증기관, 공시기관 등 승계 신고 1개월내 수리 여부 통지
- 기간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미통지시 기간(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된 때 해당 처리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수리 의제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지원

7~18조

1.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가. 장관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수립

- 수립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요

나. 내용

1) 법

- 농어업 분야 환경보전 정책목표, 기본방향
- 농어업 환경오염 실태, 개선
-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 친환경 약제, 병충해 방제
-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교육, 지도

- 친환경농어업 시범단지 육성
- 친환경농수산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소비 촉진
-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 국제협력 강화
- 육성계획 추진 재원 조달
- 인증기관 육성

2) 부령들